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9. 3 선고 2019나13207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9. 3 선고 2019나1320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8가합5206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장윤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츠로

담당변호사 정현우, 김정원

변론 종결2020. 7. 9.

판결 선고2020. 9. 3.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8가합520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공사대금 30,295,89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1,275,684원 및 그중 6,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130,792,221원에 대하여는 2019. 4. 24.부터 각 2020.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4,8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7면 제15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9면 제6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을 제1, 7, 17호증의 각 기재"로, 제10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4행부터 제11면 제7행까지의 "2) 계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계산

가)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성립과 동시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지체상금채무 또한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성립과 동시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지체상금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대지급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피고의 2018. 6. 1.자 준비서면이 2018. 6. 4.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상계를 주장한 지체상금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지급금채권은 각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2017. 6. 27.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13,582,800원의 지체상금채권 및 62,931,587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6,495,000원의 대지급금채권 중 2017. 7. 19. 대지급한 가스 인입공사비 6,200,000원(갑 제11호증, 갑 제20호증)을 제외한 20,295,000원의 대지급금채권은 위 2017. 6. 27. 이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348,4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2017. 6. 27.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지급금채권 중 가스 인입공사비 6,200,000원을 제외한 20,295,000원은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은 56,219,387원(= 13,582,800원+62,931,587원-20,295,00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292,180,613원(= 348,400,000원 -56,219,387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남은 대지급금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3. 31.부터(피고의 대지급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대지급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남은 공사대금 292,180,613원 및 이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7. 6. 28.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제3자의 추심 및 전부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31,092,502원 부분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F에게 이전되었고, 30,295,890원 부분에 대한 추심권능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G에게 이전되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8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16. 7. 18.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1678호로 공사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2017. 7. 25.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나61068호 사건에서 2018. 4. 5.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1.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8다237510호 사건에서 2018. 8. 3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은 2018. 9. 10. 확정되었다.

(2) F은 2018. 10. 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1706호로 위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167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25,991,789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8.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다만 2018. 12. 5. 제3채무자를 "H"에서 "B"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8. 1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3) F은 2018. 10. 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합138호로 위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1678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 위 법원으로부터 이송결정을 받았고, 이송 후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909호로 진행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2018. 12. 7. 위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9.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4) F은 2019. 3. 1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2507호로 위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90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5,100,713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9. 3. 1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3. 2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9. 4. 6. 그대로 확정되었다.

(5) G은 2019. 2. 1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1448호로 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18년 제80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30,295,89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9. 2.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4.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사대금채권 중 ①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170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125,991,789원 및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2.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②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250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5,100,713원 및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3. 26.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각각 F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① 292,180,613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170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8. 12. 1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253,137원[= 292,180,613원 $\times$ 0.05 $\times$ (1+166/365), 원 미만 버림], ② 166,188,824원(=292,180,613원-125,991,789원)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18. 12. 11.부터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250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9. 3. 2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90,387원(=166,188,824원 $\times$ 0.05 $\times$ 105/365, 원 미만 버림), ③ 161,088,111원(=292,180,613원-125,991,789원-5,100,71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19. 3.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144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30,2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4.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추심권능은 G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① 위에서 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2017. 6. 28.부터 2019. 3. 25.까지의 지연손해금

23,643,524원(=21,253,137원 +2,390,387원), ② 161,088,111원에 대하여 위 2019. 3.

26.부터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144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인 2019. 4.

23.까지의 지연손해금 639,939원(=161,088,111원×0.05×29/365, 원 미만 버림), ③

130,792,221원(=161,088,111원-30,2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19. 4.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마.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8행부터 제11면 제14행까지의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공사대금 30,295,890원 및 이에 대한 위 2019. 4.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지급금 6,200,000원과

남은 공사대금 155,075,684원[=130,792,221원+2017. 6. 28.부터 2019. 4. 23.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금 24,283,463원(=21,253,137원+2,390,387원+639,939원)]의 합계금

161,275,684원 및 그중 6,2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3. 31.부터, 130,792,221원에 대해서는

2019. 4. 24.부터 각 2020.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공사대금 30,295,89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구

판사이재환

판사전경옥